

충청북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**충청북도의회**  
**산업경제위원회**

# 충청북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상식 의원 등 7인

### 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0년 10월 5일
- 회부일자 : 2020년 10월 6일

### 3. 제안이유

-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소재·부품·장비 기업이 국방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, 이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

### 4. 주요내용

- 가. 국방산업의 육성 및 국방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 규정(안 제3조)
- 나. 국방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국방산업육성 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(안 제4조)
- 다. 국방산업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

라. 국방산업계획의 수립·시행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20명 내외로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함(안 제7조)

## 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우경수)

### 가. 제출배경

- '20년 국방예산 50조원 돌파, 방위산업이 국내 생산액 17조원을 초과하는 등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틈새시장 및 판로개척 필요성 대두
- 기업의 방산분야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지역별 센터\* 개소 中(각시도)  
\* '21년 상반기 충북 국방벤처센터 설립 예정  
※ 군납기업 : 2005년 2업체 → 2017년 141업체 / 우리도 21개 기업(그린광학 등)
- 우리도 소재부품장비산업을 방위산업으로 확산, 고도화 지원 필요
- 도내 기업의 방산분야 진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, 이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기 위함

### 나. 주요 검토내용

-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'국방산업\*' 및 '국방 중소·벤처기업\*\*'의 정의를 규정함

\* 국방산업 : 「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과 관련된 사업 「방위사업법」 제3조제8호에 따른 방위산업, 방위산업물자 또는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산업

\*\* 국방 중소벤처기업 : 국방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「중소기업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

- 안 제3조는 국방산업의 육성 및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
- 안 제4조는 국방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국방산업 육성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함
- 안 제5조는 국방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효율적인

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, 안 제6조는 보조금 등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

- 안 제7조와 제8조는 국방산업육성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과 국방산업 육성사업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국방산업발전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
- 안 제9조는 국방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함

#### 다. 종합 검토의견

- 방위산업은 튼튼한 안보를 건설하는 국가 핵심 산업이자 첨단 기술 개발을 견인하고 방산수출을 일궈내는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임
- 본 조례안은 충북 도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 벤처기업이나 소재 부품 장비(소부장) 기업이 국방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기 위한 것으로
- 국방산업육성계획 수립 시행, 사업비 지원,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설치 운영 등 국방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